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84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8일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추진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취약·위기가족지원, 이혼전후상담,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현황		이용인원(일)
		사용면적(m ²)	규모	
서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증가로 244(북가좌2동)	366.47	지하1층 지상3층	120~160명
	증가로 30길 45-9(북가좌2동) ※ 아이돌봄 지원사업	135.53	지상4층 (1층전부, 2층일부 사용)	
	통일로 27길 19(홍제1동)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178.5	지상5층 (2층사용)	30~35명

- 위탁기관 : 학교법인 이화학당
- 주요사업
 - 가족교육, 가족역량강화지원, 이혼위기가족지원, 가족상담
 -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상시프로그램 운영
 - 방문교육사업, 사례관리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한국어교육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사무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기간 : 2018. 9. 1. ~ 2021. 8.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서대문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관 계 법 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5
----------	-----

2018년 4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3월 28일, 서대문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8년 3월 28일
-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 4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가. 제안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과 일치시키고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수탁대상 민간기관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학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위탁기간의 명시(3년, 재위탁의 경우 한차례만 가능)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개정 이후 조문으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5조)

-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안 제1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일우)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8. 3. 28. 서대문구청장에 의해 의안번호 제 375호로 제출되어 2018. 3. 28.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됨.
- 동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의견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기본법」 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센터임.¹⁾
- 서대문구에서는 2006. 7.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를 제정·공포한 이후 2015년까지 「건강가정기본법」 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지방비 100%)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국비 50% 지방비 50%)를 각각 개별사업으로 운영하였고,²⁾ 2016년도 서대문구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통합센터인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제시함.³⁾

1)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1), 2017. 1. p.8
 2) 2015년 서대문구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과-2690(2015. 1. 26.)]
 3)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2016년도 시행계획[여성가족과-16076(2016. 4. 16.)]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2017년 1월 현재)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년	9	1	1	1	-	1	-	-	-	1	-	-	1	-	1	1	1	-
15년	22	3	3	3	1	1	1	-	-	2	1	1	2	-	1	2	1	-
16년	78	7	3	5	7	4	2	1	1	6	5	2	7	3	9	9	7	-
17년	101	10	3	6	7	4	2	3	1	14	9	4	8	3	10	9	8	-

- 동 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5)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에서 재위탁의 횟수를 1회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사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횟수 제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사한 의견제시사례가 있음.⁶⁾
- 동 개정조례안의 그 밖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므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1), 2017. 1. p.4
 5)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6) 의견13-0297, 2013. 10. 24, 서울특별시 / 의견15-0311, 2015. 12. 3, 경기도